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0. . .	
연월일	(제 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인건비의 범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과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경비로 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라.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인력의 인건비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인건비계정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안 제4조제3항)

- 마.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건비계정의 세입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부 시·도에 한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제5조 제2항에 따라 인건비계정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바.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시·도 일반회계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사.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으로 하고, 다만, 일부 시·도에 한하여 조례로 인건비 계정 전입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 아.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은 시·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전입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 자.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입규모의 상한 또는 하한의 범위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차.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도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사전협의 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04. 29. ~ 06. 12.)

2) 재입법예고(2020. 06. 23. ~ 08. 03.)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준용)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인건비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
3.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제4조(인건비계정 세입의 범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 인건비계정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제2항과 제4항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중 제5조제2항 단서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5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 세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세 중 보통세(이하 “보통세”라 한다)의 1천분의 5 이상을 소방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전입 규모를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전입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인건비계정 세입의 전입규모를 정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광주·대전광역시를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경기도 :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30 이하
2. 광주·대전광역시 :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때에는 시·도의 예산계획, 편성기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전입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예산편성기준 등 세부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입규모의 상한 또는 하한의 범위를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운용사항의 분석·평가 등) ① 소방청장은 특별회계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운용실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각 계정별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시 부터 적용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5 - 7225